



Indonesia Tax Info 2022 년 3 월호

건설 서비스에 대한 최종 분리과세 소득세율 업데이트

2022 년 2 월 21 일 인니 정부는 2008 년 규정 No. 51(2009 년 규정 No. 40 에 의해 수정됨)에 규정된 건설 서비스에 대한 최종 분리과세 소득세율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2022 년 규정 No. 9(PP-9)를 발행했음. PP-9 는 2022 년 2 월 21 일 부터 시행됨. 일반적으로 건설 서비스에는 소득세법 제 4 조 2 항의 최종 분리과세 소득세가 적용되며 이는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가 원천징수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의 자진 신고 납세를 통해 원천징수됨.

건설 서비스가 건설공사의 기획, 수행, 감리로 구분되는 PP-51 과 달리 PP-9 는 건설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건물 건설에 대한 평가, 계획, 설계, 감리 및 관리의 전체 또는 일부 활동을 포함하는 건설 공사 컨설팅;

In this issue:

1. [Final income tax rates for construction services updated](#)
2. [List of business sectors eligible for investment under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issued](#)

Customs Focus:

3. [Addition of goods classification and imposition of import duty tariffs on imported goods for motor vehicle industry](#)

- 건물의 건설·운영·유지·철거 및 재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의 수행; 및
- 설계, 구매 및 건설(EPC) 모델과 설계 및 시공 결합 모델을 포함하는 건설 공사 수행과 건설 컨설팅 서비스를 포함하는 건설공사 통합 서비스 수행.

적용 가능 새로운 최종 분리과세 소득세율은 제공되는 건설 서비스 유형과 특정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분류 및 자격 증명서에 근거함. 공인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음:

- 인도네시아 건설협회(lembara pengembangan jasa konstruksi)가 등록하고 공공사업주택부의 인가를 받은 기업 협회가 설립한 기업 인증 기관;
- 에너지광물자원부(MoEMR)의 인가를 받은 기업인증기관
- MoEMR; 및
- 전문 인증 기관(lembara sertifikasi profesi)(개인이 제공하는 건설 서비스용).

신규 최종분리과세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음:

건설 서비스	최종분리과세 소득세율*
소규모 기업 사업자자격증 (sertifikat badan usaha kualifikasi kecil) 또는 개인사업자자격증명서 (sertifikat kompetensi kerja untuk usaha orang perseorangan)를 소지한 용역업체의 건설공사 수행	1.75%
법인사업자자격증 또는 개인사업자자격증명서 없이 용역업체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4%
중대형 또는 전문업 자격을 소지한 용역업체의 건설공사 수행	2.65%
사업자자격증을 소지한 용역업체의 건설공사 통합 서비스 수행	2.65%
사업자자격증 없이 용역업체가 건설공사 통합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4%
사업자자격증 또는 개인사업자자격증명서를 소지한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건설 공사 컨설팅	3.5%
사업자자격증 또는 개인사업자자격증명서 없이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건설 공사 컨설팅	6%

*건설 서비스 제공자가 고정사업자(PE)인 경우, 표에 기재된 최종소득세율은 해당 PE 에 해당하는 지점세를 포함하지 않음

PP-9 에 따르면 2022 년 2 월 21 일 이전에 건설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 년 2 월 20 일까지 결제한 금액에 대해 PP-51 에 따른 최종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2022 년 2 월 21 일 또는 그 이후에 지불에는 PP-9 에 따른 새로운 최종분리과세 소득세율이 적용됨.

또한 PP-9 는 PP-9 에 배치되지 않는 기존 PP-51 에 따른 모든 시행령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PP-9 에 따른 최종분리과세 소득세율에 대한 평가/점검은 PP-9 발효 3 년후 재무부장관(MoF)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

서비스 소득은 소득세법 제 17 조에 따르는 일반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자진 신고 프로그램에 따른 적격 투자 기업 부문 목록 발행

2021 년 12 월에 재무부 장관이 발행한 신고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자진 신고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No. 196/PMK.03/2021(PMK-196)에 따르면 재무부 장관은 VDP 투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납세자가 투자할 수 있는 천연 자원 처리 및 재생 에너지 부문을 결정할 것이라고 규정 ([Tax Alert January 2022](#) 참조). 2022 년 2 월 24 일에 재무부 장관이 적격 투자 부문 목록을 제공하는 결정서 No. 52/KMK.010/2022(KMK-52)를 발행. VDP 계획(VDP I & VDP II)에 따라 자산이 인니에 있거나 해외에 있지만 인니로 송환되어 특정 투자 상품에 투자되는 경우 세율이 감액됨. 적격 프로젝트 또는 상품에 투자할 의사를 신고한 납세자는 2023 년 9 월 30 일까지 투자를 이행해야 함.

KMK-52 provides a list of natural resources processing, renewable energy, and relevant supporting sectors that are eligible for investment under the VDP.

KMK-52 는 VDP 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천연 자원 처리, 재생 에너지 및 관련 부문으로 332 개의 인도네시아 표준 산업 분류 (Klasifikasi Baku Lapangan Usaha Indonesia (KBLIs)) 목록을 제공합니다. 해당 KBLI 는 아래 업종과 관련됨.

- 지열 산업;
- 가공업;
- 전기, 가스, 증기/온수 및 냉기 공급;
- 용수 관리, 폐수 관리,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재생 활동;
- 운송 및 창고업; 및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VDP 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KMK-52 의 KBLI 목록 검토를 통해 관심 투자 업종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는 VDP 요건 충족을 위해 투자 상품으로 사모 투자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1 차 시장의 1 차 딜러(재무부가 지정한 은행 또는 증권사)로부터 구매한 국영 증권(즉, 국채 및 정부/국가 샤리아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관세 포커스

자동차산업 수입품에 대한 상품분류 추가 및 수입관세 부과

재무부 장관은 2022 년 규정 No. 13(PMK-13)을 발행 운송 산업에서 상품 분류 시스템의 결정 및 수입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에 관한 2020 년 규정 No. 17(PMK-17)의 조항을 개정했음. PMK-13 은 4 른 이상 자동차 산업 발전과 도로 운송을 위한 배터리 기반 전기 자동차 프로그램의 가속화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PMK-13 에 따라 2022 년 인도네시아 관세 목록 (Buku Tarif Kepabeanan Indonesia (BTKI)), 즉 운송 산업에 대한 특별 조항에 관한 98 장에 상품 분류 구조 및 수입 관세 부과에 대한 추가 관세 항목이 있음. 추가 항목은 항목 9801 하위 항목 9801.90 아래에 나열되며 PMK-17 항목 9801 아래 목록은 하위 항목 9801.80 까지만 표시됨.

항목 9801.90 의 세부 정보는 다음과 같음:

PMK-13 adds certain electric motorized vehicles to BTKI to provide import duty incentiv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ndustry in Indonesia.

번호	항목	내용	관세율
	9801	불완전하게 분해된 상태의 자동차; 엔진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설치된 새시	
	9801.90	- 추진용 배터리 기반 전기 모터만 있는 4 른 또는 그 이상의 전기 자동차:	
10819a	9801.90.10	- - 하위 항목 8701.20 의 세미 트레일러용 도로 트랙터	0%
10819b	9801.90.20	- - 하위 항목 8702.40 의 운전자를 포함하여 10 명 이상의 운송을 위한 자동차류	0%
10819c	9801.90.30	- - 하위 항목 8704.90 의 다른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자동차류	0%
10819d	9801.90.40	- - 하위 항목 8704.90 의 상품을 운송하는 차량	0%
10819e	9801.90.50	- - 항목 87.06 의 추진을 위한 전기 모터가 장착된 새시	0%

PMK-13 은 이 규정이 발효되는 일자(즉, 2022 년 2 월 28 일)를 기준으로 등록된 수입 상품관련 세관 서류에 적용됨.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mehimawan@deloitte.com

Business Tax, M&A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supriyanto@deloitte.com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